



제433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순직군경 등’ 을 ‘순직군경소방 등’ 으로 변경 〉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8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달회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6.
3. 회부연월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군경’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재해사망군경소방·공상군경소방·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현행법 제75조제2항1)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중 순직한 경우 그 유족과,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과 그 가족은 현행법 제75조제3항2)에 따라 각각 해당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은 각각에 ‘소방’ 문구를 추가하여 ‘순직군경소방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 1)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 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2)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 ② (생략)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순직군경의</u>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재해사망군경의</u>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군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u>공상군경과</u>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재해부상군경과</u> 그 가족으로 본다.	③ ----- ----- ----- ----- <u>순직군경소방의</u> ----- ----- ----- <u>재해사망군경소방의</u> ----- ----- ----- ----- ----- ----- ----- <u>공상군경소방과</u> ----- ----- ----- <u>재해부상군경소방과</u>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순직·공상시 개정안 용어 >

구분	내용	현행 용어	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순직	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순직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군경소방
국가유공자법	공상	공상군경	공상군경소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공상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군경소방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에서는 그 대상자로 군인, 경찰공무원 뿐만아니라

소방공무원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에는 제외되어 있어 현행 ‘순직군경 등’에 ‘소방’이란 용어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³⁾되어 있음.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순직군경 등’을 인용하고 있는 「병역법」에도 해당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용어의 통일성과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제1398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제13984호) 정부위원회 회부

□ 다만, 법률안 개정방식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의미의 변경이 없이 단순한 인용 조항의 수정인 경우에는 인용되는 법률용어의 본법(국가유공자법 등)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을 통하는 것이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 법개정 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 방지 측면에서 적절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의 개정’ 예시 >

「군인사법」 부칙 <제14609호, 2017.3.21>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 ④ ~<19>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국방부 및 병무청은 해당 내용은 「병역법」상 실제적인 의미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인용 조항 수정사항이므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⁵⁾.

4)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현재 ‘순직군경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타 법률이 다수 존재하므로, 「국가유공자법」등 개정안 부칙에서 해당 내용을 일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보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립묘지법」, 「고엽제법」 등

문 의 처
02)6788-5308